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37호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공 고

- 공 고 제 1812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1826 호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 고 및 의 건 수 렴 교 통 행 정 과 4

고 시

- 고 시 제 128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9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 공 고

남동구청 제2023-1812호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무단전출,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 10. 13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3.10.13. ~ 2023.11.1.

3. 공 고 대 상 : 96루9731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 연번 | 접수번호       | 차량등록<br>번호 | 차명 | 방치장소<br>(인천광역시남동구) | 수취인명 | 주 소                                | 발송일자<br>(1,2차)             | 미배달사유 | 견인일자 | 보관장소 | 연락처 | 비고 |
|----|------------|------------|----|--------------------|------|------------------------------------|----------------------------|-------|------|------|-----|----|
| 1  | 2023-00201 | 96루9731    | 라보 | 구월동 1463           | 김*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br>아암대로 ***, ****호(**동) | 2023.10.13.<br>~2023.11.1. | 폐문부재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 - 1826호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6.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7조제1항)
  - 존속기한 : 2024. 1. 1. ~ 2028. 12. 31.(5년)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 연 락 처 : ☎ 453-2882, FAX 453-28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4.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항

##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3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안 제7조제1항)
  - 존속기한 : 2024. 1. 1. ~ 2028. 12. 31. (5년)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가능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항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존속기한) ①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7조(존속기한) ① -----<br>--- 2028년 12월 31일-----<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참고자료]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③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5.28.>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128호

##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13.

##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8 (구월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25-24 (고잔동) 외 5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br>부여사유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부여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램 (1건) |       |           |             |              |               |     |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폐지일 |             | 폐지 사유        |               | 비 고 |
| 별 도 열 램 (6건)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br>구월동 70-16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용천로105번길 8<br>(구월동) | 2023.9.27. |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br>1060m지점에서 왼쪽으로<br>분기하는 도로 | 2023.9.27.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br>용천로105번길 8<br>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을<br>건물번호로 부여 |    |

##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25-24 (고잔동)   | 2023.10.13. | 건축물대장 말소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106-3 (고잔동)     | 2023.10.13. | 건축물대장 말소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91-1 (간석동)      | 2023.10.13. | 건축물대장 말소 |    |
| 4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5번길 18 (간석동)    | 2023.10.13. | 건축물대장 말소 |    |
|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2번길 9-10 (간석동) | 2023.10.13. | 건축물대장 말소 |    |
|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2번길 9-12 (간석동) | 2023.10.13. | 건축물대장 말소 |    |